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서

(이하“위탁자”라 한다)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의 원리금 지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의 수탁)

위탁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지급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

1. 사채의 명칭 :
2. 사채의 종류 :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4. 사채의 발행가액 :
5.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6. 사채의 거래단위 :
7. 사채의 이율 :
8. 발행일 : 년 월 일
9. 상환기일 및 방법 : 사채의 원금은 년 월 일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10. 이자지급기일 :
11. 연체이자 :
1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또는 사모)에 의한 발행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3. 사채관리회사 :
14.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15. 기타 :

제2조(업무취급장소)

수탁자는 대행업무 및 상환청구 접수를 취급하며 수탁자의 지점을 주된 업무취급장소로 한다.

제3조(업무처리의 준거 기준)

- ①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각항 이외에 관계법, 수탁자의 내규 및 위탁자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며, 수탁자의 내규와 위탁자의 내규가 충돌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전항의 경우 위탁자는 그 내규를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의 각 조항 및 관계 법규, 기타 내규의 해석과 업무집행 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이 계약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장부 및 서류의 인도)

- ①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 등을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에 관한 명세표
 2. 사채원리금 지급 원부
 3. 소유자증명서
 4. 인감부(무기명식 사채인 경우는 제외)
 5.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발행회사의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사고관계 문서



7. 기타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② 수탁자는 전항의 장부 및 서류를 대행업무 종결 또는 위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상자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권리자로 확인된 사채권자 또는 등록 담보권자로 한다.

제6조(사채원리금 지급자금의 인도)

- ① 위탁자는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자금(지급할 원리금 상당액)을 반드시 각 지급결제일의 미결제 통보시각(14시)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입금 사실을 반드시 수탁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자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

① 출금계좌의 지정

1.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수탁자에 개설된 아래의 요구불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고 위탁자의 사채원리금지급 용도로 사용한다.

2. 사채원리금 출금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 출금

3.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지정용도
		사채원리금지급대행 수수료 출금

4.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출금계좌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당자의 지정 : 위탁자는 사채원리금 입금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담당자 변경 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성명	핸드폰 번호 (SMS 교환안내 수신번호)	회사 전화번호

제8조(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

- ① 위탁자가 각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14시)까지 지급할 자금을 수탁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때(본부집중의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탁기관(있는 경우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② 전 항의 통보를 한 후에 위탁자가 지급할 자금을 인도한 때(본부집중의 경우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수탁자는 그 사실을 지급보증기관(있는 경우에 한함) 및 수탁기관(있는 경우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제9조(사채권자의 확정)

“본 사채”의 사채원리금 수령권자는 전자등록기관이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원리금교환청구에 기재된 권리자로 한다. 수탁자는 원리금교환청구에 기재된 권리자를 사채원리금 수령권자로 확정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별도의 지급원부나 지급위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필 통지의 갈음)

- ① 수탁자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경우, 수탁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사채원리금 이체확인서(이체영수증 등)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 ② 본부집중의 경우 사채원리금은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인출 처리되는 바, 위탁자는 지급필 통지 내역을 출금계좌의 인출 내역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제11조(통지 또는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소각을 위하여 사채를 매입한 때
2. 기한 전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 때
3. 차환 발행하게 된 때
4. 사채의 전자등록이 있는 때
5. 사채의 이전등록, 이기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있는 때
6. 원리금 지급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7. 개인, 주소변경, 명칭변경 또는 법인대표자,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의 선임, 변경, 해임 등의 신고가 있는 때
8. 사채에 대하여 공시최고 또는 제권판결이 있거나 사고신고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채권이 있는 때
9. 전자등록된 사채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말소,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전자등록이 있는 때
10. 전자등록된 사채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된 때
11. 사채의 이율, 원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수탁자의 면책)

- ① 제11조의 통지 또는 신고가 있기 전에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위조 또는 변조 채권이나 증표(원리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사채원리금 출금계좌에 예금 압류, 지급정지 등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사채원리금 지급 기일에 위탁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채원리금 출금계좌에서 사채원리금지급 이외의 사유로 지급되어 계좌의 잔고가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보다 적은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채원부의 기재변경)

위탁자로부터 사채원부의 기재 변경이 수반되는 통지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는 사채원리금 지급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령권자가 확정된 후에는 소유권, 질권, 신탁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천징수)

위탁자가 발행하는 사채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발행되는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제15조(경비부담)

- ① 위탁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는 수탁자의 수수료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시행 전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한다. 위탁자는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수탁자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종결)

이 계약은 원금상환이 개시된 날로부터 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지 통고함으로써 종결한다.

- 1.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업무규정 또는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여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 2. 사실상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제17조(종결업무)

- ①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통지서와 원리금 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미지급 자금과 함께 종결일 익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 ② 위탁자는 전항이 종결통지서 접수 즉시 대행종료 확인증 및 수령증을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의 소정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종결 년 월일
 - 2. 종결되는 대행업무의 내용
 - 3. 차후 대행업무의 취급방법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대표이사 (인)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대표이사 은행장
위 대리인 지점 지점장 (인)

